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승인취소 근거 마련〉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4712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승인취소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승인 취소 근거 마련

개정안은 일정 기간 건설폐기물의 미반입으로 임시보관장소 승인 취소를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3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허가취소 등) ①·② (생략)	제25조(허가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u>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3. <u>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3조의21),

시·도지사는 일정기간 임시보관장소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제25조제3항2).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승인 취소를 규정함에 따라 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승인 취소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2. 삭제 <2017. 4. 1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취소 등) ③ 시·도지사는 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4. 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유사 입법례로서 동법 제17조의5³⁾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취소, 제27조⁴⁾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 및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대법원 판례⁵⁾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营业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대법원 2004.4.28.선고, 2002두11752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정사유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2]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소정의 추정사유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채 3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 의 처
02)6788-5546